

기금관리 규정

2014. 7. 22. 제정

2015. 5. 8. 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란 본교의 발전계획 등에 따라 적립된 연구·장학·건축·기타 기금 등 각종 기금을 통칭한다.
2. “단위기관”이란 본교의 대학원(전문·특수 대학원 포함), 대학, 학과(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등 이화여자대학교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뜻한다.

제3조(기금의 분류) 본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금”이란 본교의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총장이 수립한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뜻한다.
2. “특정기금”이란 지정된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뜻한다.
3. “원금보존기금”이란 원금을 보존하면서 기금의 운용 수익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뜻한다.
4. “임의기금”이란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뜻한다.

제4조(기금 운영의 원칙) ① 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와 본교의 장기 발전 및 세대간 공평 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일반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의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2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금의 설치
2.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자의 회의 출석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나 자료를 그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금운용소위원회) ① 기금의 수익성 증대와 가치 보존을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소위원회는 기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③ 기금운용소위원회는 재무처장, 재무처부처장, 자금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금운용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소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8.)

제3절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기금과 특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기금의 설치 목

기금관리 규정

적, 명칭, 재원, 용도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그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기관의 장은 해당 기금을 설치한 후 제2항을 준용하여 총장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기부자의 의사 등에 따라 그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제1호에 준하여 기금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13조(기금의 구분·관리)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3조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관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특정기금을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해당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기관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위기관이 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기관별 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각종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6조(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일반기금의 기금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총장이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총장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영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특정기금의 기금운영계획은 재무처 또는 해당 단위기관의 장이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수립하여 위원회 또는 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④ 재무처 또는 해당 단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영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금운영계획의 내용) ① 총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일반기금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수입 예측에 따른 기금 적립 계획
2.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인출 계획
3. 매 회계연도 기금의 예상 수익
4. 신규 기금의 확충 방안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재무처와 단위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특정기금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수입 예측에 따른 기금 적립 계획
2.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인출 계획
3. 매 회계연도 기금의 예상 수익

제18조(기금의 적립과 인출) 기금은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적립하고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자의 의사 등에 따라 긴급하게 기금을 적립하거나 인출하여야 할 경우
2. 운용 수익의 감소 등으로 인해 특정기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기금운영계획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9조(기금의 결산) 재무처는 매 회계연도마다 본교에 설치된 기금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4. 7. 2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본교에 설치된 기금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분류를 새로 정한다.

부 칙(2015. 5. 8.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